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94
----------	-------

발의연월일 : 2025. 9. 4.

발 의 자 : 신장식 · 황운하 · 김선민
차규근 · 김남근 · 한창민
서왕진 · 이용우 · 윤종균
최혁진 · 강경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급여수준이 낮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수급권의 보장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중간에 고용단절기간을 두는 등의 쪼개기 계약의 편법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가입이 제한되는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의무화하여 단기간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1년”을 “2개월”로 한다.

제5조 중 “1년”을 “2개월”로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1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 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 속근로기간이 <u>1년</u> 미만인 근로 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 ----- ----- ----- --. ----- <u>2개월</u>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 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 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 (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 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 립 후 <u>1년</u>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 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 급여제도) ----- ----- ----- ----- ----- ----- ----- <u>2개월</u> ----- ----- -----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 ② (생략)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④ -----

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
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illegible]

-----. 다만, 가입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
한다.

제15조(급여수준) -----

ㄱ.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